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9호 2022. 4. 1(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39호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745호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7
- 남원시 공고 제2022-758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
- 남원시 공고 제2022-769호 남원시 공시송달공고-----34
- 남원시 공고 제2022-780호 남원시 도로지정공고-----3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39호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남 원 시 장



1.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 2) 처분내용: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식물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 농작업자의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2.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 ※ 관련 산업 종사자: 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 관계자 등
- 2) 처분내용: 과수원 출입용 신발·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 농작업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소독방법: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이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밀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살포

- 소형도구(전정·적과가위, 전정톱 등): 작업도중 나무가 바필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소독
- 대형 농기구(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등): 소독액을 과원 출입 시 또는 작업 중 수시로 골고루 살포
- 복장(장갑, 신발, 작업복 등): 소독액을 분무기로 골고루 수시 살포
- 주의사항: 차이염소산나트륨(락스) 소독 시 금속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음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 소독을 통해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 효과 증가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3.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품목별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에 약제살포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8조
- 4) 처분사유: 약제 살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적용하여 방제효과 제고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4.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과수(사과·배 등) 묘목·종자 생산자, 묘목 유통업자, 묘목 반출자(구입자)
- 2) 처분내용: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관리, 건전 묘목 구입, 재식 전 감염 여부 검사, 과수화상병 의심 묘목 즉시 신고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의 2, 제38조, 제50조
- 4) 처분사유: 묘목장 등 묘목생산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 제식 전 감염여부 검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 차단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5.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과수 제배 전 생육기에 상시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을 준수하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우선 신고(☎ 063-620-8031~2, 4~5)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 2, 제38조, 제50조
- 4) 처분사유: 자가 예찰 강화 및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농가책임 부여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6.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과수 경작자는 주요 작업일정, 농작업자의 교육 및 소독
 이행사항, 묘목 식재, 약제살포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 제50조
- 4) 처분사유: 과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농가 의무사항을 영농일지를
 통해 확인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7.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 2) 처분내용: 외부인 출입제한, 타 과수원 방문 자제, 농작업자(작업단)의 등록·교육·신고, 과수원 출입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과원·지역 간 과수화상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역간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8.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

- ◇ 과수화상병 매개곤충의 종류(미국 USDA 등)
 - 꿀벌, 개나무좀류 2종, 나무좀류, 개미류, 진딧물류 2종, 파리류, 노린재류 4종, 매미충류 2종, 나무이류 등이 보고되어 있음
 - * 출처: Van der Zwet T & H.L. Keil, 1992. Fire Blight
- ◇ 국내 야생곤충의 과수화상병균 검출 조사결과
 - '16~'18년: 꿀벌
 - '19년: 갈색날개매미충, 꽃등애
 - '16~'18년: 기생파리과, 장님노린재과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매개곤충과 야생동물을 통제하여 과수화상병 전파 가능성 차단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9.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및 과원 출입자
-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의 과원 밖 이동·유출 금지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
-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전업원의 이동으로 지역간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 금지 및 유입차단 필요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10.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1) 처분당사자: 남원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은 신고하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제거 후 해당 약제 도포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 2
- 4) 처분사유: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가 예찰을 실시하고, 주요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 등 감염위험원을 사전 제거하여 병 발생 환경을 최소화
- 5) 처분기간: 2022. 3. 3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3. 31. 16:00부터

11. 기 타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이외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 식물방역법에 농가예방 수칙 의무 등 법령개정이 진행 중이며, 법 개정 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감액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남원시 공고 제2022-745호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관라운용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3. 28. ~ 4. 1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2층,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rudghks92@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6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 ~ 4.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범죄 관련 등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

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

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예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22-758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3조)
- 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15조)
- 마. 사무의 위탁, 준용, 포상 규정 등(안 제16조~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3. 29. ~ 2022. 4. 1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ph0724@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6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출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1. 개정이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3조)
- 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15조)
- 마. 사무의 위탁, 준용, 포상 규정 등(안 제16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29. ~ 2022. 4. 18.(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추천 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예술담당 국장 및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6.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보호·지원·육성
7.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환경 개선
8. 지역, 단체, 기업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 지원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원지회의 지원·육성
11. 생활문화 활동의 지원·육성
12. 그 밖에 남원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또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7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31. ~ 2022. 4. 15.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3.30.)	이○기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624, 625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619-1	주1 목조 주택 21.19㎡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30.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 남원시 공고 제 2022 - 780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지 위치	건축주 성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1 0	남원시 광치동 736-1(답)	대한예수교 장로회남원 새생명교회	2022-건축과- 신축허가-	31.2	3	109.8 6	남원시 광치동 산288	36.34	국(건설부)
							남원시 광치동 827	61.28	국(건설부)
							남원시 광치동 산214	12.24	남원시